

| | |
|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3091호 |
| 의결 | 2026. . . |
| 연월일 | (제 회) |

| | |
|------|--|
| 의결사항 | |
|------|--|

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출자 | 고성군수 |
| 제출연월일 | 2026. 4. 24. |

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3091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연월일: 2026. 4. 24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 사항 반영(안 제33조)

-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조정비율 확대 (현행) 100분의 70 → (개정) 100분의 100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」 반영

1) 관사의 일원화(안 제48조 및 제49조)

2) 소속 직원의 직무관련성 기준으로 개선

- (현행) 소속 공무원 → (개정) 소속 직원(안 제47조, 제50조, 제51조 제5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6조 및 제34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8176(2026. 2. 20.)호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399호
 - 가) 예고기간: 2026. 2. 20.~2026. 3. 17.(25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 중 “따라 해당연도의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”를 “따른”으로, “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”을 “대부료의”로, “70으로 한다”를 “100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47조 중 “공무원”을 “직원”으로 한다.

제48조를 삭제한다.

제49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무원”을 “소속 직원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4호 중 “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”를 삭제한다.

제51조 중 “공무원”을 “소속 직원”으로 한다.

제54조제1호 및 제3호 중 “공무원”을 각각 “소속 직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33조(대부료 등의 조정)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</p> | <p>제33조(대부료 등의 조정) ----- ----- 따른 ----- ----- 대부 료의 ----- ----- 100으로 한다.</p> |
| <p>제47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관사”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(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)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.</p> | <p>제47조(정의) ----- ----- 직원----- -----.</p> |
| <p>제48조(관사의 구분)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삭제 2. 2급 관사 :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. 3급 관사 : 시설관리사·그 밖의 관사 등 | <p><삭 제></p> |
| <p>제49조(사용허가)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. 다만,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.</p> | <p>제49조(사용허가) ----- ----- . <단서 삭 제></p> |
| <p>제50조(사용책임) 관사를 사용하는</p> | <p>제50조(사용책임) -----</p> |

공무원(이하“사용자”라 한다)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4.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

제51조(관사 관리대장의 비치)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·정리하여야 하며,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54조(사용료의 면제)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
2. (생략)
3. 시설의 보호·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

소속 직원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사용자-----

제51조(관사 관리대장의 비치) --

----- 소속 직원-----

-----.

제54조(사용료의 면제) -----

-----.

1. ----- 소속 직원-----

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
----- 소속 직원-----

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
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재무과장 오 은 겸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6조(사용료의 조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(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)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.

제34조(대부료의 조정)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(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)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(권고)

- (검토배경) 2025년 국정감사 시 지자체 관사수 증가, 운영비 지원 등 문제점 지적과 함께 행안부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제기
- (관사운영 기본원칙) 현행 조례에서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1·2·3급 관사를 일원화하고, 운영방식은 소속 직원*의 직무 관련성 기준으로 개선

* 조례 개정(관사 정의) : 소속 공무원 → 소속 직원